

「농업재해보험 ·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론서 최종본 수정대비표 (22.05.10. 기준)

※ 목차를 제외한 1·2권 '페이지'는 이론서 수정본(2차) 기준

□ 목차

순번	권	장	기존(수정본2차)	정정(최종본)	비고
1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보험의 이해	제1절 위험과 보험 1	제1절 위험과 보험 1	변경 없음
2			제2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 12	제2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 12	변경 없음
3			제3절 보험의 기능 19	제3절 보험의 기능 19	변경 없음
4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24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24	변경 없음
5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46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46	변경 없음
6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52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52	변경 없음
7			제3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6	제3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6	변경 없음
8			제4절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8	제4절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8	변경 없음
9			제5절 농업재해보험 법령 60	제5절 농업재해보험 법령 60	변경 없음

순번	권	장	기존(수정본2차)	정정(최종본)	비고
10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65	제1절 제도 일반 65	변경 없음
12			제2절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90	제2절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90	변경 없음
13			제3절 계약 관리 160	제3절 계약 관리 160	변경 없음
14		제4장 가축재해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184	제1절 제도 일반 184	변경 없음
15			제2절 가축재해보험 약관 202	제2절 가축재해보험 약관 202	변경 없음
16			제3절 특별약관 206	제3절 특별약관 206	변경 없음
17			제4절 가축재해보험 계약 214	제4절 가축재해보험 계약 214	변경 없음
18	2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 221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 221	변경 없음
19			제2절 손해평가 체계 224	제2절 손해평가 체계 224	변경 없음
20			제3절 현지조사 내용 239	제3절 현지조사 내용 239 228	4.29 반영 완료
21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제1절 보장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231	제1절 보장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231 230	4.29 반영 완료
22			제2절 손해평가 기본단계 252	제2절 손해평가 기본단계 252 251	4.29 반영 완료

순번	권	장	기존(수정본2차)	정정(최종본)	비고
23	2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254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254 253	4.29 반영 완료
24			제4절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332	제4절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332 331	4.29 반영 완료
25			제5절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52	제5절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52 351	4.29 반영 완료
26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95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95 394	4.29 반영 완료
27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제7절 농업수입보장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09	제7절 농업수입보장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09 410	4.29 반영 완료
28			제1절 보상하는 손해 432	제1절 보상하는 손해 432 433	4.29 반영 완료
29			제2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 438	제2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 438 439	4.29 반영 완료
30			제3절 손해의 평가 447	제3절 손해의 평가 447 448	4.29 반영 완료
31			제4절 특약의 손해 평가 462	제4절 특약의 손해평가 462 463	4.29 반영 완료
32			제5절 보험금 지급 및 심사 469	제5절 보험금 지급 및 심사 469 474	4.29 반영 완료

순번	권	장	기존(수정본2차)	정정(최종본)	비고
33	부록	<부록 1>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1.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 529	1.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529 533	4.29 반영 완료
34			2.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 .. 530	2.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 530 534	4.29 반영 완료
35			3.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538	3.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538 543	4.29 반영 완료
36		<부록 2> 주요 법령	1. 농어업재해보험법 543	1. 농어업재해보험법 543 548	4.29 반영 완료
37			2.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55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552 557	4.29 반영 완료
38			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 570	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570 575	4.29 반영 완료
39			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82	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82 587	4.29 반영 완료
40			5.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585	5.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 585 590	4.29 반영 완료
41			<부록 3> 참고 문헌	<부록> 3 참고 문헌 586	<부록 3> 참고 문헌 586 591

□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	표지	서문	본 자료는 2021년 기준 관련법령, 사업시행지침,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련법령, 사업시행지침, 보험약관 등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4.29 반영 완료
2	3p	나. 위험과 관련 개념	1) 위태 2) 손인	1) 위태(Hazard) 2) 손인(Peril)	4.29 반영 완료
3	22p	가. 역선택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게 결과가 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게 결과가 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4.29 반영 완료
4	26p	3)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즉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에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즉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에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5.4 반영 완료
5	34p	가. 보험자의 의무	첫 번째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 번째는 보험자는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하여야 운영해야 한다. 이 외에 보험자는 소비자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관점에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대한 설명 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 번째는 보험자는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하여야 운영 해야 한다. 이 외에 보험자는 소비자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	36p	나) 위험 유지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5.4 반영 완료
7	36p	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과 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에게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5.4 반영 완료
8	46p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농업은 물(수분), 불(온도, 빛) 및 흙(토양) 등 자연조건의 상태에 따라 성공과 실패, 풍흉이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 때문이다. 또한 모든 토지가 농업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며, 매우 제한적이다.	농업은 물(수분), 불(온도, 빛) 및 흙(토양) 등 자연조건의 상태에 따라 성공과 실패, 풍흉이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토지가 농업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며, 농업에 적합한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연도	제정 및 시행일시	주요 내용	연도	제정 및 시행일시	주요 내용	
9	61p	표 2-1. 농어업재해보험 법 주요 변천 내역	2001년	○보험 대상 농작물의 종류 피해 정도, 자연 재해의 범위 등을 대통 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1년	○보험 대상 농작물의 종류 피해 정도, 자연 재해의 범위 등을 대 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2010년	2009.3.5. 개정 2010.11. 시행	2010년	2009.3.5. 개정 2010.1.1. 시행				
2014년	2014.6.3. 개정 2015.6.4 시행	2014년	2014.6.3. 개정 2015.6.4. 시행 2014.12.4 시행				
10	63p	가. 농어업재해보험 법	총 32개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32개 본문은 제1장 총칙(제1-3조),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4장 보험사업 관리,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32개 본문은 제1장 총칙(제1-3조),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4장 보험사업 관리,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29 반영 완료
11	64p	라. 기타 농업재해보험 관련 행정규칙	주요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업무위탁, 약정체결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업무위탁, 약정체결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29 반영 완료
12	67p	다. 사업 운영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3	70p	표 3-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자격(2021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명</th> <th>가입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사과, 배,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 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 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td> <td>농지의 보험 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td> </tr> <tr> <td>차,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td> <td>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td> </tr> </tbody> </table>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 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 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명</th> <th>가입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 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 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td> <td>농지의 보험 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td> </tr> <tr> <td>차(茶),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td> <td>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td> </tr> </tbody> </table>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 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 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	차(茶),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	4.29 반영 완료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 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 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 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 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																
차(茶),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																
14	70p	1) 보험 대상 농작물(보험의 목적물)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이며, 이외에 농업시설물로는 버섯재배사, 농업시설물 등이 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이며, 이외에 농업시설물로는 버섯재배사, 농업시설물 등이 있다.	4.29 반영 완료												
15	71p	1) 보험 대상 농작물(보험의 목적물)	<p>(4) 특용작물 (5개 품목)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p> <p>(5) 버섯류 (4개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p> <p>(6) 시설작물 (22개 품목)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썩갠</p>	<p>(4) 특용작물 (5개 품목) 인삼, 차(茶), 오미자, 복분자, 오디</p> <p>(5) 버섯작물류 (4개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p> <p>(6) 시설작물 (22개 품목) ○ 화훼류 :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 비화훼류 :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 쪽파), 무, 미나리, 썩갠</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6	72p	표 3-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별 및 사업지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품목</th> <th>사업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본사업</td> <td>감자</td> <td>[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강원</td> </tr> <tr> <td>시범사업</td> <td>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td> <td>전국</td> </tr> <tr> <td>시범사업</td> <td>봄감자</td> <td>경북, 충남</td> </tr> </tbody> </table>	구분	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감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강원	시범사업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국	시범사업	봄감자	경북, 충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품목</th> <th>사업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본사업</td> <td>감자</td> <td>[가을재배] 전국 [고랭지재배] 강원</td> </tr> <tr> <td>시범사업</td> <td>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td> <td>전국</td> </tr> <tr> <td>시범사업</td> <td>봄감자(봄재배)</td> <td>경북, 충남</td> </tr> </tbody> </table>	구분	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감자	[가을 재배] 전국 [고랭지 재배] 강원	시범사업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국	시범사업	봄감자(봄재배)	경북, 충남	4.29 반영 완료
구분	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감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강원																											
시범사업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국																											
시범사업	봄감자	경북, 충남																											
구분	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감자	[가을 재배] 전국 [고랭지 재배] 강원																											
시범사업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국																											
시범사업	봄감자(봄재배)	경북, 충남																											
17	73p	표 3-3. 2021년도 시범사업 품목(24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년차</th> </tr> </thead> <tbody> <tr> <td>작물명</td> <td>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td> </tr> <tr> <td>작물수</td> <td>8</td> </tr> </tbody> </table>	구분	3년차	작물명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작물수	8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년차</th> </tr> </thead> <tbody> <tr> <td>작물명</td> <td>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봄재배),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td> </tr> <tr> <td>작물수</td> <td>8</td> </tr> </tbody> </table>	구분	3년차	작물명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봄재배),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작물수	8	4.29 반영 완료												
구분	3년차																												
작물명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작물수	8																												
구분	3년차																												
작물명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봄재배),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작물수	8																												
18	74p	표 3-4.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품목</th> <th>대상재해</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위험</td> <td>마늘, 양파 팥, 보리</td> <td>자연재해, 조수해, 화재</td> </tr> <tr> <td>종합위험</td> <td>복분자</td> <td>(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td> </tr> <tr> <td>종합위험</td> <td>무화과</td> <td>(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품목	대상재해	종합위험	마늘, 양파 팥, 보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종합위험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품목</th> <th>대상재해</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위험</td> <td>마늘, 양파 팥, 보리,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td> <td>자연재해, 조수해, 화재</td> </tr> <tr> <td>종합위험</td> <td>복분자</td> <td>(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td> </tr> <tr> <td>종합위험</td> <td>무화과</td> <td>(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품목	대상재해	종합위험	마늘, 양파 팥, 보리,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종합위험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4.29 반영 완료
구분	대상품목	대상재해																											
종합위험	마늘, 양파 팥, 보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종합위험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구분	대상품목	대상재해																											
종합위험	마늘, 양파 팥, 보리,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종합위험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9	78p	1)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단지 300㎡ 미만, 차, 사료용 옥수수과 사료용 벼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단지 면적 300㎡ 미만, 차, 사료용 옥수수와 조사료용 벼 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4.29 반영 완료																												
20	79p	표 3-6.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판매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td> <td>4~6월</td> </tr> <tr> <td>감자</td> <td>(봄감자) 4~5월, (고랭지감자) 5~6월, (가을감자) 7~8월</td> </tr> <tr> <td>벼, (사료용)벼</td> <td>4~6월</td> </tr> </tbody> </table>	품목	판매 기간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4~6월	감자	(봄감자) 4~5월, (고랭지감자) 5~6월, (가을감자) 7~8월	벼, (사료용)벼	4~6월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판매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td> <td>4~6월</td> </tr> <tr> <td>감자</td> <td>(봄감자재배) 4~5월, (고랭지감자재배) 5~6월, (가을감자재배) 7~8월</td> </tr> <tr> <td>벼, 조사료용 벼</td> <td>4~6월</td> </tr> </tbody> </table>	품목	판매 기간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4~6월	감자	(봄감자재배) 4~5월, (고랭지감자재배) 5~6월, (가을감자재배) 7~8월	벼, 조사료용 벼	4~6월	4.29 반영 완료												
품목	판매 기간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4~6월																																
감자	(봄감자) 4~5월, (고랭지감자) 5~6월, (가을감자) 7~8월																																
벼, (사료용)벼	4~6월																																
품목	판매 기간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4~6월																																
감자	(봄감자재배) 4~5월, (고랭지감자재배) 5~6월, (가을감자재배) 7~8월																																
벼, 조사료용 벼	4~6월																																
21	81p	표 3-8 방재시설 할인율 (단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발작물</th> </tr> </thead> <tbody> <tr> <td>방재시설</td> <td>감자</td> </tr> <tr> <td>방조망</td> <td></td> </tr> <tr> <td>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td> <td></td> </tr> <tr> <td>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td> <td>5</td> </tr> <tr> <td>조수해방재시설</td> <td></td> </tr> <tr> <td>경음기</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발작물	방재시설	감자	방조망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5	조수해방재시설		경음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발작물</th> </tr> </thead> <tbody> <tr> <td>방재시설</td> <td>감자⁴⁾</td> </tr> <tr> <td>방조망</td> <td></td> </tr> <tr> <td>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td> <td></td> </tr> <tr> <td>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td> <td>5</td> </tr> <tr> <td>조수해방재시설</td> <td></td> </tr> <tr> <td>경음기</td> <td></td> </tr> </tbody> </table> <p>4)봄재배, 가을재배만 해당(고랭지재배는 제외)</p>	구분	발작물	방재시설	감자 ⁴⁾	방조망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5	조수해방재시설		경음기		4.29 반영 완료
구분	발작물																																
방재시설	감자																																
방조망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5																																
조수해방재시설																																	
경음기																																	
구분	발작물																																
방재시설	감자 ⁴⁾																																
방조망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5																																
조수해방재시설																																	
경음기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2	82p	표 3-8 방재시설 할인율 (단위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과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방재시설</td> <td>-</td> </tr> <tr> <td>지주시설</td> <td>Y형</td> <td>-</td> </tr> <tr> <td colspan="2">방상팬</td> <td>-</td> </tr> <tr> <td colspan="2">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td> <td>-</td> </tr> <tr> <td colspan="2">비가림시설</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과수	방재시설		-	지주시설	Y형	-	방상팬		-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	비가림시설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과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방재시설</td> <td>자두</td> </tr> <tr> <td>지주시설</td> <td>Y형</td> <td>5</td> </tr> <tr> <td colspan="2">방상팬</td> <td>15</td> </tr> <tr> <td colspan="2">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td> <td>15</td> </tr> <tr> <td colspan="2">비가림시설</td> <td>10</td> </tr> </tbody> </table>	구분		과수	방재시설		자두	지주시설	Y형	5	방상팬		15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15	비가림시설		10	4.29 반영 완료
구분		과수																																							
방재시설		-																																							
지주시설	Y형	-																																							
방상팬		-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																																							
비가림시설		-																																							
구분		과수																																							
방재시설		자두																																							
지주시설	Y형	5																																							
방상팬		15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15																																							
비가림시설		10																																							
23	83p	가) 보험료의 산정	<p>① 과수 4종</p> <p>-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부보장 및 한정 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x (1-방재시설할인율)</p> <p>-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p>	<p>① 과수 4종</p> <p>-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부보장 및 한정 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x (1-방재시설할인율)</p> <p>-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p>	4.29 반영 완료																																				
24	86p	3. 정부의 지원	<p>※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p>	<p>※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5	87p	나. 농업정책보험금 용원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연구·개선,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하고,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을 실시(법 제8조)한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연구·개선,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하고,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을 실시(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 제8조)한다.	4.29 반영 완료
26	93p	(1)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만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한다.	4.29 반영 완료
27	100p	2) 주요 특징	과수작물의 종합위험 보장상품은 크게 종합위험수확감소보장방식(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8개 품목), 종합위험비가림과수손해보장방식(포도, 대추, 참다래),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 종합위험과실손해보장방식(오디, 감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은 수확전까지는 종합위험을 수확 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 피해만 보상한다.	과수작물의 종합위험 보장상품은 크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8개 품목), 종합위험 비가림과수손해보장방식(포도, 대추, 참다래),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오디, 감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은 수확전까지는 종합위험을 담보하고 수확 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 피해만 보상한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8	101p	가) 보상하는 손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정의	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정의	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	4.29 반영 완료								
구분	정의																				
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																				
구분	정의																				
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																				
29	104p	(3) 수확전 종합위험방식(복분자, 무화과)	(3) 수확전 종합위험방식(복분자, 무화과)	(3)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복분자, 무화과)	4.29 반영 완료																
30	105p	다)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1)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 단위 이하는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29 반영 완료																
31	109p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포도, 참다래, 대추)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지급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td> <td>비가림 시설</td> <td>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td> <td>.....</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 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지급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td> <td>비가림 시설</td> <td>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td> <td>※ 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미적용</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 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미적용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 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 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미적용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32	110p		<p>(3) 수확 전 종합위험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지급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복분자</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 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복분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p>(3)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지급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복분자</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 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아래) 참조</td> </tr> </tbody> </table>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복분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아래) 참조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복분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 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복분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아래) 참조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33	112p	(5)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복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4.29 반영 완료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34	116p	2) 보험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h rowspan="2">보험의 목적</th> <th colspan="2">보험기간</th> </tr> <tr> <th>약관</th> <th>보장</th> <th>대상 재해</th> <th>보장개시</th> <th>보장종료</th> </tr> </thead> <tbody> <tr> <td>병충 해보 장특 약</td> <td>....</td> <td>병해 충 (7종)</td> <td>벼</td> <td>보통약관 보험시기 와 동일</td> <td>보통약관 보험종기 와 동일</td> </tr> </tbody> </table>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병충 해보 장특 약	병해 충 (7종)	벼	보통약관 보험시기 와 동일	보통약관 보험종기 와 동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h rowspan="2">보험의 목적</th> <th colspan="2">보험기간</th> </tr> <tr> <th>약관</th> <th>보장</th> <th>대상 재해</th> <th>보장개시</th> <th>보장종료</th> </tr> </thead> <tbody> <tr> <td>병충 해보 장특 약</td> <td>....</td> <td>병해 충 (7종)</td> <td>벼</td> <td>각 보장별 보통약관 보험시기 와 동일</td> <td>각 보장별 보통약관 보험종기 와 동일</td> </tr> </tbody> </table>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병충 해보 장특 약	병해 충 (7종)	벼	각 보장별 보통약관 보험시기 와 동일	각 보장별 보통약관 보험종기 와 동일	4.29 반영 완료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병충 해보 장특 약	병해 충 (7종)	벼	보통약관 보험시기 와 동일	보통약관 보험종기 와 동일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병충 해보 장특 약	병해 충 (7종)	벼	각 보장별 보통약관 보험시기 와 동일	각 보장별 보통약관 보험종기 와 동일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35	119p	5) 보험금	<p>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조사료용 벼, 밀, 보리,</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td> </tr> <tr> <td>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벼</td> <td>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	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	<p>가)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벼, 밀, 보리, 조사료용 벼</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 단, 조사료용 벼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장비율 표 및 경과비율 표 참조</td> </tr> <tr> <td>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벼</td> <td>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밀, 보리, 조사료용 벼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 단, 조사료용 벼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장비율 표 및 경과비율 표 참조	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																										
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밀, 보리, 조사료용 벼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 단, 조사료용 벼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장비율 표 및 경과비율 표 참조																										
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36	120p	다) 자기부담비율에(조사료용 벼는 보장비율) 다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p>다) 자기부담비율에(조사료용 벼는 보장비율) 다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1)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벼, 밀, 보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p>다)나) 자기부담비율에(조사료용 벼는 보장비율) 다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1)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벼, 밀, 보리만 해당)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페이지 내 편집순서변경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장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보장비율</td> <td>45%</td> <td>42%</td> <td>40%</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p><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월별</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r> </thead> <tbody> <tr> <td>경과비율</td> <td>80%</td> <td>85%</td> <td>90%</td> <td>100%</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4.29 반영 완료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37	121p	다) 자기부담비율에(조사료용 벼는 보장비율) 다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보장비율</td> <td>45%</td> <td>42%</td> <td>40%</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월별</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r> </thead> <tbody> <tr> <td>경과비율</td> <td>80%</td> <td>85%</td> <td>90%</td> <td>100%</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장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보장비율</td> <td>45%</td> <td>42%</td> <td>40%</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p><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월별</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r> </thead> <tbody> <tr> <td>경과비율</td> <td>80%</td> <td>85%</td> <td>90%</td> <td>100%</td> </tr> </tbody> </table> <p>*페이지 121→120 로 변경 (편집순서변경)</p>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4.29 반영 완료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38	121p	라)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산출방식	<p>라)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산출방식</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수확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60%</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57%</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55%</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50%</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60%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p>라)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산출방식</p>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수확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60%</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57%</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55%</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50%</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60%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4.29 반영 완료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60%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60%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39	123p	3. 발작물	<p>가. 대상품목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p> <p>.....</p> <p>나. 보장방식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p> <p>1) 발작물의 보장방식은 크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 파(대파, 쪽파) 9개 품목),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인삼)으로 구분 가능하다.</p> <p>2) ... 마지막으로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은 인삼(작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며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종합위험을 보장한다.</p>	<p>가. 대상품목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재배, 봄감자재배, 가을감자재배), ...</p> <p>.....</p> <p>나. 보장방식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p> <p>1) 발작물의 보장방식은 크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재배, 봄감자재배, 가을감자재배), ... 파(대파, 쪽파실파) 9개 품목),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인삼)으로 구분 가능하다.</p> <p>2) ... 마지막으로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은 인삼(작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며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종합위험을 보장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40	126p	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마늘, 양파 등 9개 품목)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종료 시점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4.29 반영 완료
			종합위험 경작불능 보장	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종합위험 경작불능 보장	감자 (봄 배 감자, 가을 배 감자)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41	130p	다)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방식(인삼)	다)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방식(인삼)				다)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방식(인삼)				4.29 반영 완료
42	131p	(나) 해가림시설 설치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① 동일한 재료(목재 또는 철제)로 설치하였으나 ② 1개의 농지 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목재+철제)로				① 동일한 재료(목재 또는 철제 재)로 설치하였으나 ② 1개의 농지 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목재+철제 재)로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3	134p	5) 보험금	<p>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의 경작불능 및 수확감소보장의 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td> <td>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td> <td>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td> </tr> <tr> <td>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td> <td>옥수수 (사료용 옥수수)</td> <td>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td> <td>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p>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재배감자, 봄재배감자, 가을재배감자), ... (1)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의 경작불능 및 수확감소보장의 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td> <td>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td> <td>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표 및 경과비율표 참조(137p)</td> </tr> <tr> <td>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td> <td>옥수수 (사료용 옥수수)</td> <td>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td> <td>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표 및 경과비율표 참조(137p)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표 및 경과비율표 참조(137p)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4	137p	사) 자기부담비율(사료용 옥수수는 보장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p>사) 자기부담비율(사료용 옥수수는 보장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p> <p>(1)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2) 사료용 옥수수의 보장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 부담 비율</th>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보장 비율</td> <td>45%</td> <td>42%</td> <td>40%</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월별</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r> </thead> <tbody> <tr> <td>경과비율</td> <td>8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body> </table> <p>(3)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p>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 부담 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 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p>사) (2) 자기부담비율(사료용 옥수수는 보장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산출방식(사료용 옥수수 제외)</p> <p>(1)(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p>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2)(나) 사료용 옥수수의 보장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p> <p><자기부담비에 따른 보장비율 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보장비율</td> <td>45%</td> <td>42%</td> <td>40%</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p><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비율 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월별</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r> </thead> <tbody> <tr> <td>경과비율</td> <td>8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body> </table> <p>(3)(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p> <p>*페이지 137→135 로 변경 (편집순서변경)</p>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4.29 반영 완료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 부담 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 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5	135p	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장	<p>마늘, 양파 품목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조기 파종 보장 (특별 약관)</td> <td>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td> <td>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조기 파종 보장 (특별 약관)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p>마늘, 양파배추 품목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조기 파종 보장 (특별 약관)</td> <td>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td> <td>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아래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td> </tr> </tbody> </table>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 조기파종특약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2%</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28%</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2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25%</td> </tr> </tbody> </table> <p>*페이지 135→136 로 변경 (편집순서변경)</p>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조기 파종 보장 (특별 약관)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아래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32%	15%형	보험가입금액의 30%	20%형	보험가입금액의 28%	30%형	보험가입금액의 2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25%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조기 파종 보장 (특별 약관)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조기 파종 보장 (특별 약관)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아래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32%																																
15%형	보험가입금액의 30%																																
20%형	보험가입금액의 28%																																
30%형	보험가입금액의 2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25%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6	135p	다) 생산비보장(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	<p>다) 생산비보장(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td> <td>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p>다) 생산비보장(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td> <td>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td> <td>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아래) 참조</td> </tr> </tbody> </table>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페이지 135→137 로 변경 (편집순서변경)</p>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아래) 참조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 약관)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아래) 참조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7	136p	마)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인삼)	마)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인삼)	마)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인삼)	4.29 반영 완료
48	138p	아) 자기부담금	아) 자기부담금	아)사 자기부담금	4.29 반영 완료
49	139p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포함)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 포함) 가. 대상품목 :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금치, 파, 무, 썩갓, 장미, 부추), 버섯(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나. 보장방식 : (농업용시설물)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 보장, (시설작물, 버섯)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1)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 농업용시설물(하우스, 유리 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에 손해 발생시 원상복구비용을 보장하며, 화재 피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특약 가입시 보장한다. 2)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은 농업용시설물 가입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 가입대상 시설작물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22개 작물과 표고버섯 등 4개 버섯 작물이다.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 작물 포함) 가. 대상품목 :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금치, 파, 무, 썩갓, 장미, 부추), 버섯 작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나. 보장방식 :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보장 방식 ,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종합위험 버섯재배사 손해보장방식 , (시설작물, 버섯 작물)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1)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 농업용 시설물 혹은 버섯재배사 (하우스,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에 손해 발생시 원상복구비용을 보장하며, 화재피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특약 가입시 보장한다. 2)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작물 은 농업용시설물 혹은 버섯재배사 가입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 가입대상 시설작물 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22개 시설작물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4개 버섯작물이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50	140p	1) 보상하는 손해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상하는 손해</td> </tr> <tr> <td>공통</td> <td>1.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td> </tr> </table>	구분	보상하는 손해	공통	1.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상하는 손해</td> </tr> <tr> <td>공통</td> <td>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의 경우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작물의 경우</td> </tr> </table>	구분	보상하는 손해	공통	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의 경우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작물의 경우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상하는 손해																
공통	1.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																
구분	보상하는 손해																
공통	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의 경우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작물의 경우																
51	141p	2) 보장 목적물	<p>가) 종합위험 원예시설</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 대상 목적물</td> </tr> <tr> <td>농업용 시설물</td> <td>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td> </tr> <tr> <td>부대시설</td> <td>모든 부대시설</td> </tr> </table>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	<p>가) 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보장</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 대상 목적물</td> </tr> <tr> <td>농업용 시설물</td> <td>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td> </tr> <tr> <td>부대시설</td> <td>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td> </tr> </table>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																
52	141p	나)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 대상 목적물</td> </tr> <tr> <td>버섯재배사</td> <td>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td> </tr> <tr> <td>부대시설</td> <td>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td> </tr> </table> <p>-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p>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 대상 목적물</td> </tr> <tr> <td>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td> <td>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td> </tr> <tr> <td>부대시설</td> <td>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td> </tr> </table> <p>-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의 경우,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p>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																
53	142P	나)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 대상 목적물</td> </tr> <tr> <td>시설재배 농작물</td> <td>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td> </tr> </table>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시설재배 농작물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 대상 목적물</td> </tr> <tr> <td>시설재배 농작물 버섯</td> <td>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td> </tr> </table>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시설재배 농작물 버섯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시설재배 농작물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시설재배 농작물 버섯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54	143p	4) 보험가입금액	<p>가) 농업용 시설물 (1) 재조달 기준금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리온실(경량철골조), 내재해형하우스, 비규격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가) 유리온실(경량철골조)은 m²당 50,000~500,000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가능하다. 나) 부대시설 (1)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다) 시설작물 (1)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한다. (2)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p>	<p>*내용 추가하여 전면 개정 가) 원예시설 (1) 농업용시설물 (가)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나) 적산으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유리온실(경량철골조), 내재해형하우스, 비규격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유리온실(경량철골조)은 m²당 5~50만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가능하다. (2) 부대시설 (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3) 시설재배 농작물 (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한다. (나) 상기 산출된 보험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준	정정	비고
			 <p data-bbox="853 927 1272 1038">농업정책보험금융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p>	<p>나) 버섯</p> <p>(1) 버섯재배사</p> <p>(가)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p> <p>(나) 적산으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버섯재배사(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내재해형하우스, 비규격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버섯재배사(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는 m²당 5~50만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가능하다.</p> <p>(다) 재조달가액 특약 미가입시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고려하여 시가기준으로 결정(보험사고 시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재조달가액 특약 가입 시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결정한다.</p> <p>(2) 부대시설</p> <p>(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p> <p>(나) 재조달가액 특약 미가입시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고려하여 시가기준으로 결정(보험사고 시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재조달가액 특약 가입 시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결정한다.</p> <p>(3) 시설재배 버섯</p> <p>(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한다.</p> <p>(나) 상기 산출된 보험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p>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55	144p	5) 보험금	<p>가)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에 시설 손해 보장 (보통 약관)</td> <td>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td> <td>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td> <td>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 만큼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함 $\text{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원에 시설 손해 보장 (보통 약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 만큼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함 $\text{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p>가)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에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통 약관)</td> <td>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td> <td>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td> <td>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text{*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원에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통 약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text{*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원에 시설 손해 보장 (보통 약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 만큼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함 $\text{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원에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통 약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text{*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56	145p	다) 버섯	<p>다) 버섯 6) 자기부담금 가) 농업용 시설물과 라)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p>	<p>다) 버섯작물 6) 자기부담금 가)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과 라)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57	146p	7) 특별약관	<p>가)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 중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생기 때에는</p> <p>나)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p> <p>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p> <p>라)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p>	<p>가)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 중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생기 때에는</p> <p>나)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시설·버섯작물)</p> <p>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p> <p>라)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시설·버섯작물)</p>	4.29 반영 완료								
58	147p	8) 계약의 소멸	<p>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p>	<p>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p>	4.29 반영 완료								
59	148p	6. 농업수입보장	<p>6. 농업수입보장 가. 대상품목 :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다. 상품 내용 1) 보상하는 손해</p> <table border="1"> <tr> <td>가입대상품목</td> <td>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td> </tr> <tr> <td>가을감자</td> <td>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td> </tr> </table>	가입대상품목	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	가을감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p>6.5. 농업수입보장 가. 대상품목 :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다. 상품 내용 1) 보상하는 손해</p> <table border="1"> <tr> <td>가입대상품목</td> <td>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td> </tr> <tr> <td>가을감자(가을재배)</td> <td>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td> </tr> </table>	가입대상품목	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	가을감자(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4.29 반영 완료
가입대상품목	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												
가을감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가입대상품목	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												
가을감자(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0	151p	나)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 고구마, 양배추, 콩	<p>나)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재정식보장 (보통약관)</td> <td>양배추</td> <td>.....</td> <td>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td> </tr> <tr> <td>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td> <td>.....</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td> </tr> <tr> <td>농업수입감소 보장 (보통약관)</td> <td>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td> <td>.....</td> <td>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재정식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농업수입감소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p>나)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장</th> <th>보험의 목적</th> <th>보험금 지급사유</th> <th>보험금 계산 (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재정식 보장 (보통약관)</td> <td>양배추</td> <td>.....</td> <td>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td> </tr> <tr> <td>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td> <td>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td> <td>.....</td> <td>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아래) 참조</td> </tr> <tr> <td>농업수입감소 보장 (보통약관)</td> <td>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td> <td>.....</td> <td>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td> </tr> </tbody> </table> <p><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기부담비율</th> <th>경작불능보험금</th> </tr> </thead> <tbody> <tr> <td>1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5%</td> </tr> <tr> <td>15%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2%</td> </tr> <tr> <td>2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40%</td> </tr> <tr> <td>3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5%</td> </tr> <tr> <td>40%형</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재정식 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아래) 참조	농업수입감소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4.29 반영 완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재정식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농업수입감소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재정식 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아래) 참조																																														
농업수입감소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순번	페이지	제목	기준	정정	비고
61	153p	(다) 기준가격의 산출	① 장류 및 두부용, 밥밀용 ○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① 장류 및 두부용, 밥밀용 ○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평균값 ⁹⁾ 에 농가수취비율 ¹⁰⁾ 을 곱하여 산출한다. 9)연도별 평균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산술평균 10)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한 농가수취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전에 결정된 값 *각주로 약관상 정의 추가	4.29 반영 완료
62	155p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②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용도(또는 품종)의 고구마가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해당용도(또는 품종)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용도(또는 품종)의 고구마가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해당용도(또는 품종)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4.29 반영 완료
63	156p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기초통계의 수확연도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나)에서 정한 기초통계의 수확연도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4.29 반영 완료
64	160p	가. 보험가입 지역	-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감귤, 벼, 마늘, 양파,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 버섯, 인삼 : 전국 - 무화과 : 전남(영암, 신안, 목포, 해남) - 봄감자 : 경북, 충남 - 고랭지감자 : 강원 - 차 : 전남(보성, 광양, 구례), 경남(하동) - 농업수입보장 가을감자 : 전남(보성)	-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감귤, 벼, 마늘, 양파, 고추, 가을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 버섯, 인삼 : 전국 - 무화과 :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 봄감자(봄재배) : 경북, 충남 - 고랭지감자(고랭지재배) : 강원 - 차(茶) : 전남(보성, 광양, 구례), 경남(하동) - 농업수입보장 포도 : 경기(화성, 가평), 경북(상주, 영주, 영천, 경산) - 농업수입보장 가을감자(가을재배) : 전남(보성)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5	162p	나) 과수원 구성 방법	(8)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 (9)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8) (5)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 (9) (6)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4.29 반영 완료
66	162p	2) 논작물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내용 추가	나) 조사료용 벼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한다.	4.29 반영 완료
67	163p	2) 논작물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나)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 다) 농지 구성 방법	나)다)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 다)라) 농지 구성 방법	4.29 반영 완료
68	163p	3) 밭작물 (메밀, 콩,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	3) 밭작물 (메밀, 콩,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 나)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1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콩(수입보장 포함),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노지),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월동 무, 월동 배추 품목에 해당 다)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양파(수입보장 포함), 마늘(수입보장 포함), 감자(봄·가을(수입보장 포함)·고랭지), 고구마(수입보장 포함), 양배추(수입보장 포함), 고추, 인삼 품목에 해당	3) 밭작물 (메밀, 콩, 팥,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 대파, 쪽파·실파 ..) 나)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1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콩(수입보장 포함),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당근, 브로콜리 , 단호박, 시금치(노지),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월동 무, 월동 배추 품목에 해당 다)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양파(수입보장 포함), 마늘(수입보장 포함), 감자(봄·가을(수입보장 포함)·고랭지), 고구마(수입보장 포함), 양배추(수입보장 포함), 브로콜리 , 고추, 인삼 품목에 해당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9	164p	3) 발작물 (메밀, 콩,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	마) 농지 구성 방법	<p>마)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한다.</p> <p> 마) 농지 구성 방법 따바) 농지 구성 방법 </p>	4.29 반영 완료
70	165p	4) 원예시설 5) 버섯	<p>4) 원예시설 5) 버섯 나)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가능</p>	<p>4)5) 원예시설 5)6) 버섯 나) 농업용 시설물을 버섯재배사를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버섯작물 가입 가능</p>	4.29 반영 완료
71	166p	가. 인수 제한 목적물	<p>1) 과수(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 나)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품목에 한하여 가입 가능)</p>	<p>1) 과수(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 나)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주력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품목에 한하여 가입 가능)</p>	4.29 반영 완료
72	171p	4) 논작물 (벼, 맥류)	<p>가) 공통 (5) 보험가입 전 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p>	<p>가) 공통 (5) 보험가입 전 벼농작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p>	4.29 반영 완료
73	172p	5) 발작물(수확감소보장 및 특정위험보장)	<p>가) 공통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p>	<p>가) 공통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단, 옥수수, 콩, 팥은 100만원 미만)</p>	4.29 반영 완료
74	173p	5) 발작물(수확감소보장 및 특정위험보장)	<p>라) 가을감자 마) 봄감자 바) 고랭지 감자</p>	<p>라) 가을감자(가을재배) 마) 봄감자(봄재배) 바) 고랭지 감자(고랭지재배)</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75	180p	7) 원예시설/버섯	가)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가)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	4.29 반영 완료																
76	185p	나. 사업 운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이며, 현재는 가축재해보험사업자는 NH손보,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이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이며, 현재는 가축재해보험사업자는 NH손보,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이다.	4.29 반영 완료																
77	192p	1) 소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78	193p	2) 돼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79	194p	3)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80	195p	4) 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보상하는 사고</th> <th>자기 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특약</td> <td>축사 특약</td> <td>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td> <td>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 부담금																		
특약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81	198p	자. 손해평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평가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평가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4.29 반영 완료
82	206p	가. 협정보험가액 특약	특별약관에서 적용하는 가축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기평가보험 특약이다.	특별약관에서 적용하는 가축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기평가보험 특약이다.	4.29 반영 완료
83	208p	아.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약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약이다.	4.29 반영 완료
84	209p	다. 폭염재해보상 추가특약	보험목적 수용장소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의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보험목적 수용장소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의 발령 전 24시간(1일)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4.29 반영 완료
85	210p	5. 돼지, 가금 부문 특약 -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	가축보험 돼지부문과 가금부문에서는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적 장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돼지,가금 부문에 공통적용되는 특별약관이다.	5. 돼지, 가금 부문 공통 특별약관 가.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 가축재해보험 돼지부문과 가금부문에서는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적 장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돼지,가금 부문에 공통적용되는 특별약관이다.	4.29 반영 완료

□ (2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	221p	1.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실제 수확량)를 파악하여 손해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금액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특히 현지조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량 을(실제 수확량)를 파악하여 손해 비율 피해율을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금액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특히 현지조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4.29 반영 완료
2	224p	1. 관련 법령	손해평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동 시행령 및 손해평가요령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손해평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동 시행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4.29 반영 완료
3	225p	2. 손해평가의 주체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④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④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⑤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다.	4.29 반영 완료
4	225p	3. 조사자의 유형	손해사정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이다.	4.29 반영 완료
5	228p	제3절 현지조사 내용	손해평가는 보험사고 즉,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정해진 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손해평가는 보험사고 즉,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정해진 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 규모를 결정 판단 하는 것이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구분	상품군	해당 품목	조사 종류	구분	상품군	해당 품목	조사 종류	
6	230p	표 1-1.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	과수	종합위협	포도(수입보장포함), 복숭아, 자두, 유자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과수	종합위협	포도(수입보장포함), 복숭아, 자두, 유자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4.29 반영 완료
			과수	종합위협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살구, 호두	수확 개시 전·후 수확량조사	과수	종합위협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살구, 호두	수확 개시 전·후 수확량조사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만 해당	
			논/밭작물	종합위협	벼	이앙·직파 불능조사, 재이앙·재직파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수량요소)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수확량(전수)조사, 수확불능확인조사	논/밭작물	종합위협	벼(조사료용 벼 포함)	이앙·직파 불능조사, 재이앙·재직파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수량요소)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수확량(전수)조사, 수확불능확인조사 *조사료용 벼는 경작불능조사만 해당	
			논/밭작물	종합위협	양파(수입보장포함), 감자, 옥수수, 고구마, 양배추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논/밭작물	종합위협	양파(수입보장포함), 감자(수입보장포함), 옥수수(조사료용 옥수수 포함), 고구마(수입보장포함), 양배추(수입보장포함)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조사료용 옥수수는 경작불능조사만 해당	
			논/밭작물	종합위협	밀, 콩(수입보장포함)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 전수)조사	논/밭작물	종합위협	밀, 보리, 콩(수입보장 포함), 팥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 전수)조사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논/발작물	종합위험	고추, 브로콜리,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논/발작물	종합위험	고추, 브로콜리,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논/발작물	종합위험	고추, 브로콜리,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논/발작물	종합위험	고추, 브로콜리,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논/발작물	종합위험	시금치(노지)	경작불능조사,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논/발작물	종합위험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노지)	경작불능조사,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원예 시설/버섯	종합위험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하우스 손해조사	원예 시설/버섯	종합위험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손해조사	
			원예 시설/버섯	종합위험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	시설작물 손해조사	원예 시설/버섯	종합위험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 손해조사	
7	235p	2.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과수)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과수)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방식 (과수)				4.29 반영 완료
8	236p	3.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방식				4.29 반영 완료
9	237p	4. 종합위험방식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종합위험방식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종합위험방식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방식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0	238p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13)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4.29 반영 완료
11	238p	5.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손해보장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손해보장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손해보장 방식	4.29 반영 완료
12	241p	6.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벼, 맥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벼, 맥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 (벼, 맥류 논작물)	4.29 반영 완료
13	242p	7.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 (밭작물)	4.29 반영 완료
14	244p	8.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방식 (밭작물)	4.29 반영 완료
15	245p	9.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 보장방식(인삼)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 보장방식(인삼)	작물(특정위험)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손해 보장방식(인삼)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6	245p	9.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 보장방식(인삼)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r> <tr> <td>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td> </tr> </table>	구분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r> <tr> <td>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td> </tr> </table>	구분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방식	4.29 반영 완료						
구분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구분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방식															
17	248p	10. 종합위험보장(원예 시설, 버섯)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버섯)	종합위험보장 방식 (원예시설, 버섯)	4.29 반영 완료										
18	248p	10. 종합위험보장(원예 시설, 버섯) 가. 보상하는 손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종합위험보장</td> <td>원예 시설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td> </tr> <tr> <td>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td> </tr> </tbody> </table>	구분	품목	종합위험보장	원예 시설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종합위험보장</td> <td>원예 시설 및 버섯재배사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td> </tr> <tr> <td>시설작물 및 버섯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td> </tr> </tbody> </table>	구분	품목	종합위험보장	원예 시설 및 버섯재배사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4.29 반영 완료
구분	품목														
종합위험보장	원예 시설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구분	품목														
종합위험보장	원예 시설 및 버섯재배사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19	250p	11. 농업수입감소보장	농업수입감소보장	농업수입감소보장 방식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20	254p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1.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적과후 ~ 수확기종료	보상하는재해	낙과피해조사	고수 사절후 지없이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 조사 - 낙과피해 조사는 보험약관에서 보정한 과실 피해분류기 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단감 · 뽕 감	적과후 ~ 수확기종료	보상하는재해(일소포함)	낙과조사	고수 사절후 지없이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 조사 - 낙과피해 조사는 보험약관에서 보정한 과실 피해분류기 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단감 · 뽕 감	4.29 반영 완료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	착과피해조사	수확전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의 조사 - 착과피해 조사는 보험약관에서 보정한 과실 피해분류기 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	착과조사	수확 착과 확인이 가능 한시기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 조사 - 착과피해 조사 - 보험약관에서 보정한 과실 피해분류기 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21	255p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조사자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조사자-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2	278p	나)과중 조사	(6)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조사 값이 변경된 경우 에는 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 값을 적용한다.	(6)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최초 조사 값이 변경된 경우 에는 재 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 값을 적용한다.	4.29 반영 완료
23	299p	7) 유자 수확량 조사 가) 수확 개시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기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기전에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4.29 반영 완료
24	303p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1) - 나)	(3) 복숭아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4)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5)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x 0.5	(3) 복숭아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 평년수확량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x 0.5 (4)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5)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x 0.5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5	303p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1)	 <p>내용 추가</p> <p>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p>	<p>*내용 추가하여 전면 개정</p> <p>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비가림과수-포도, 대추, 참다래)</p> <p>(1)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은 상기 나)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p> <p>(2)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존비용¹²⁾은 상기 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¹³⁾ 단,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p> <p>(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12)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3) 농작물의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6	305p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p>내용 추가</p>	<p>(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p> <p>(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p>	5.9 추가 반영
27	305p	바) 자기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p>내용 추가</p>	<p>사)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상기 가)~마)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14)은 상기 가)~마)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p> <p>(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14)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28	316p	다)수확기 잔존비율	내용 추가	주2) 감귤(만감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을 의미	4.29 반영 완료																								
29	318p	가.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생육 시기</th> <th>재해</th> <th>조사 내용</th> <th>조사 시기</th> <th>조사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수확 전</td> <td>보상하는 재해</td> <td>경작불능조사</td> <td>사건후 즉시</td> <td>해당 농지의 면적 또는 고사식물체 조사 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본자만 해당</td> </tr> </tbody> </table>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경작불능조사	사건후 즉시	해당 농지의 면적 또는 고사식물체 조사 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본자만 해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생육 시기</th> <th>재해</th> <th>조사 내용</th> <th>조사 시기</th> <th>조사 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수확 전</td> <td>보상하는 재해</td> <td>경작불능조사</td> <td>사건후 즉시</td> <td>해당 농지의 면적 또는 고사식물체 조사 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본자만 해당</td> </tr> </tbody> </table>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경작불능조사	사건후 즉시	해당 농지의 면적 또는 고사식물체 조사 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본자만 해당	4.29 반영 완료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경작불능조사	사건후 즉시	해당 농지의 면적 또는 고사식물체 조사 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본자만 해당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경작불능조사	사건후 즉시	해당 농지의 면적 또는 고사식물체 조사 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본자만 해당																								
30	320p	2) 경작불능조사	(4)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은 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 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인지를 조사한다.	4)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4.29 반영 완료																								
31	323p	(8) 착과피해조사	(가)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피해 구성 구분 기준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가)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피해 구성 구분 기준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4.29 반영 완료																								
32	323p	(8) 착과피해조사	내용 추가	(나)(다)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는 <별표 3>과 같다.	4.29 반영 완료																								
33	327p	6) 미보상비율 조사(공통)	미보상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비율<별표 2>을 조사한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 <별표 2>을 조사한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34	332p	가.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tr><th colspan="2">조사 방법</th></tr> <tr> <td>이양(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td> </tr> <tr> <td>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td> </tr> </table>	조사 방법		이양(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table border="1"> <tr><th colspan="2">조사방법</th></tr> <tr> <td>이양(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td> </tr> <tr> <td>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td> </tr> </table>	조사방법		이양(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4.29 반영 완료												
조사 방법																													
이양(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조사방법																													
이양(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35	332p	가.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tr> <th>조사시기</th> <th>조사방법</th> <th>비고</th> </tr> <tr> <td>수확직전</td> <td>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전 품목</td> </tr>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전 품목</td> </tr> <tr> <td>조사 가능일</td> <td>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비만 해당</td> </tr> </table>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비만 해당	<table border="1"> <tr> <th>조사시기</th> <th>조사방법</th> <th>비고</th> </tr> <tr> <td>수확직전</td> <td>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전 품목 벼, 밀, 보리</td> </tr>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는 수량요소조사도 가능)</td> <td>전 품목 벼, 밀, 보리</td> </tr> <tr> <td>조사 가능일</td> <td>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비만 해당</td> </tr> </table>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벼, 밀, 보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는 수량요소조사도 가능)	전 품목 벼, 밀, 보리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비만 해당	4.29 반영 완료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비만 해당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벼, 밀, 보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는 수량요소조사도 가능)	전 품목 벼, 밀, 보리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비만 해당																											
36	334p	가) 조사 대상 : 벼	나) 조사 시기 : 이양 한계일(7월 31일) 이후	나) 조사 시기 : 이양 한계일(7월 31일) 이후 사고 접수 직후 실시	4.29 반영 완료																								
36-1	334p	3) 재이양·재직파조사 (벼)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이양·재직파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면적을 조사한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이양·재직파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면적을 조사한다.	5.9 반영 완료																								
37	343p	(3) 표본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다) 함수율 조사 :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다) 함수율 조사 :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 측정 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4.29 반영 완료																								
38	345p	바) 전수조사 손해평가 방법	(3) 조곡의 함수율 조사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3) 조곡의 함수율 조사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 측정 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준	정정	비고																								
39	348p	(2) 적용 품목 : 조사료용벼	(나)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같이 계산한다. <table border="1"> <tr> <td>자기부담비율</td> <td>보장비율</td> </tr> <tr> <td>10%</td> <td>45%</td> </tr> <tr> <td>15%</td> <td>42%</td> </tr> <tr> <td>20%</td> <td>40%</td> </tr> <tr> <td>30%</td> <td>35%</td> </tr> <tr> <td>40%</td> <td>30%</td> </tr> </table>	자기부담비율	보장비율	10%	45%	15%	42%	20%	40%	30%	35%	40%	30%	(나)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보장비율</td> </tr> <tr> <td>45%</td> <td>45%</td> </tr> <tr> <td>42%</td> <td>42%</td> </tr> <tr> <td>40%</td> <td>40%</td> </tr> <tr> <td>35%</td> <td>35%</td> </tr> <tr> <td>30%</td> <td>30%</td> </tr> </table>	구분	보장비율	45%	45%	42%	42%	40%	40%	35%	35%	30%	30%	4.29 반영 완료
자기부담비율	보장비율																												
10%	45%																												
15%	42%																												
20%	40%																												
30%	35%																												
40%	30%																												
구분	보장비율																												
45%	45%																												
42%	42%																												
40%	40%																												
35%	35%																												
30%	30%																												
40	350p	4) 수확량감소보험금 산정 (조사료용 벼 제외)	4) 수확량감소보험금 산정 (조사료용 벼 제외)	4) 수확량감소보험금 산정 (조사료용 벼 제외)	4.29 반영 완료																								
41	351p	나) 지급거절 사유	(1)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수확불능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1)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이상인 경우, 수확불능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4.29 반영 완료																								
42	352p	가.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마늘만 해당</td> </tr>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양배추만 해당</td> </tr>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발작물(차(茶) 제외)</td> </tr> <tr> <td>수확직전</td> <td>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전 품목</td> </tr> </table>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양배추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발작물(차(茶) 제외)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table border="1">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마늘만 해당</td> </tr>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양배추만 해당</td> </tr> <tr>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발작물 전 품목 (차(茶) 제외)</td> </tr> <tr> <td>수확직전</td> <td>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td> <td>전 품목 (조사료용 벼 제외)</td> </tr> </table>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양배추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발작물 전 품목 (차(茶) 제외)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조사료용 벼 제외)	4.29 반영 완료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양배추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발작물(차(茶) 제외)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양배추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발작물 전 품목 (차(茶) 제외)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조사료용 벼 제외)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3	356p	(나) 피해면적의 판정 기준	(4) 재정식 이행 완료 여부 조사(재정식 후(後) 조사)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전(前) 조사) 시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정식이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4) 재정식 이행 완료 여부 조사(재정식 후(後)조사)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정식 전(前)조사) 시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정식이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4.29 반영 완료																																		
44	365p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 보장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자기부담비율</th> </tr> <tr>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경작불능 보험금</td> <td>보험가입금액의 32%</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d>보험가입금액의 28%</td> <td>보험가입금액의 25%</td> <td>보험가입금액의 25%</td> </tr> </tbody> </table> <p>(3) 수확감소보험금의 계산은 아래 5)수확감소보험금 산정과 같다.</p>	구분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경작불능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32%	보험가입금액의 30%	보험가입금액의 28%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25%	[품목별 조기파종특약의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 보장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자기부담비율</th> </tr> <tr> <th>10%형</th> <th>15%형</th>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경작불능 보험금 (마늘 조기파종특약)</td> <td>보험가입금액의 32%</td> <td>보험가입금액의 30%</td> <td>보험가입금액의 28%</td> <td>보험가입금액의 25%</td> <td>보험가입금액의 25%</td> </tr> </tbody> </table> <p>(3) 수확감소보험금의 지급사유와 계산은 아래 5)수확감소보험금 산정과 같다.</p>	구분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경작불능 보험금 (마늘 조기파종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2%	보험가입금액의 30%	보험가입금액의 28%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25%	4.29 반영 완료
구분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경작불능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32%	보험가입금액의 30%	보험가입금액의 28%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25%																																		
구분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경작불능 보험금 (마늘 조기파종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2%	보험가입금액의 30%	보험가입금액의 28%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25%																																		
45	366p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 보장비율]	(2) 사료용 옥수수의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조사 결과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다음 보장비율과 경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사료용 옥수수의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조사 결과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다음 보장비율과 경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보장비율} \times \text{경과비율}$ </div>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6	367p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 보장비율]	구 분 보장비율	구분 보장비율 사료용 옥수수	5.9 반영 완료
47	368p	5) 수확감소보험금 산정	<p>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 정한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p> <p>.....</p> <p>나) 적용 품목 (1) 마늘, 양배추, 양파, 고구마,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차(茶), 콩, 팥</p> <p>.....</p> <p>(3) 감자 피해율의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에 병충해감수량을 더한 후 평년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p> <p>(4) 옥수수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text{MIN}(\text{보험가입금액},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 손해액} = \text{피해수확량} \times \text{가입가격}$ </div>	<p>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 정한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p> <p>.....</p> <p>나) 적용 품목 (1) 적용품목은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 콩, 팥, 차(茶)이다.</p> <p>.....</p> <p>(3) 감자 피해율의 경우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에 병충해감수량을 더한 후 평년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된 피해율을 적용한다.</p> <p>(4) 옥수수 품목의 수확감소보험금 산정은 아래와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text{지급보험금} = \text{MIN}[\text{보험가입금액},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 손해액} = \text{피해수확량}^{15)} \times \text{가입가격}$ </div> <p>*주석 추가 15) 동 피해수확량은 약관상 기재된 표현으로서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하여 산정한 값을 뜻함. 이는 실무상 적용하는 [별표 7] 옥수수 손해액 산식의 (피해수확량 - 미보상감수량)과 동일한 의미임.</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8	368p	다) 수확량 조사	(1) 표본조사 시 수확량 산출 합계를 곱한 값에 평년수확량을 실제 경작면적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 상면적과 기수확면적을 합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1) 표본조사 시 수확량 산출 합계를 곱한 값에 평년수확량을 실제 경작면적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 상면적과 기수확면적을의 합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4.29 반영 완료																								
49	371p	(2) 전수조사 시 수확량 산출	(라) 병충해 감수량은 감자 품목에만 해당하며,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 조사 대상 면적 합계를 곱하여 산출한다. (4) 인정비율 산정 인정비율은 병·해충별 등급에 따라 병충해 감수량으로 인정하는 비율로 아래 표와 같다. (기존 (2) 전수조사 시 수확량 산출의 371~372p)	(1) 표본조사 시 수확량 산출 (라) 병충해 감수량은 감자 품목에만 해당하며,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 조사 대상 면적 합계를 곱하여 산출한다. (4) 인정비율 산정 인정비율은 병·해충별 등급에 따라 병충해 감수량으로 인정하는 비율로 아래 표와 같다. *편집순서 변경으로 기존 370P (1)표본조사 시 수확량 산출로 이동, 내용변경 없음)	4.29 반영 완료																								
50	373p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배추(고랭지 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노지), 대파, 쪽파(실파)[1형], 쪽파(실파)[2형])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고랭지·월동), 무(고랭지무, 월동무, 고랭지·월동),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노지), 대파, 쪽파·실파[1형], 쪽파·실파[2형])	4.29 반영 완료																								
51	373p	가. 시기별 조사 종류	가.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생육 시기</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50%;">비고</td> </tr> <tr> <td>수확 전</td> <td>...</td> <td>...</td> <td>...</td> <td>...</td> <td>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노지 당근, 노지 과, 노지 무만 해당</td> </tr> </table>	생육 시기	비고	수확 전	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노지 당근, 노지 과, 노지 무만 해당	가.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생육 시기</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50%;">비고</td> </tr> <tr> <td>수확 전</td> <td>...</td> <td>...</td> <td>...</td> <td>...</td> <td>노지배추, 노지무, 단호박, 노지과, 노지당근, 메밀, 시금치(노지)만 해당</td> </tr> </table>	생육 시기	비고	수확 전	노지배추, 노지무, 단호박, 노지과, 노지당근, 메밀, 시금치(노지)만 해당	4.29 반영 완료
생육 시기	비고																								
수확 전	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노지 당근, 노지 과, 노지 무만 해당																								
생육 시기	비고																								
수확 전	노지배추, 노지무, 단호박, 노지과, 노지당근, 메밀, 시금치(노지)만 해당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52	373p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가) 적용 품목 :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가) 적용 품목 : 배추(고랭지·월동), (고랭지·월 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4.29 반영 완료																																					
53	374p	2)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가) 적용 품목 :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 월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4.29 반영 완료																																					
54	375p	2)경작불능조사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은 '계약체결 일 24시'와 '정식(파종)완료일 24시 (단, 각 품목별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메밀, 시금치(노지) 제외))'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은 '계약체 결일 24시'와 '정식·파종 완료일 24시 (단, 각 품목별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메밀, 시금치(노지) 제외)'	4.29 반영 완료																																					
55	375p	2)경작불능조사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th> <th colspan="3">정식 완료일</th> <th colspan="2">파종 완료일</th> </tr> <tr> <th>고랭지 배추</th> <th>대파</th> <th>단호 박</th> <th>고랭 지 무</th> <th>당근</th> </tr> </thead> <tbody> <tr> <td>일자</td> <td>7월 31일</td> <td>5월 20일</td> <td>5월 29일</td> <td>7월 31일</td> <td>8월 31일</td> </tr> </tbody> </table>	품목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		고랭지 배추	대파	단호 박	고랭 지 무	당근	일자	7월 31일	5월 20일	5월 29일	7월 31일	8월 31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th> <th colspan="3">정식 완료일</th> <th colspan="3">파종 완료일</th> </tr> <tr> <th>월동 배추</th> <th>...</th> <th>...</th> <th>월동무</th> <th>쪽파· 실파 ([1형]· [2형])</th> <th>시금 치 (노지)</th> </tr> </thead> <tbody> <tr> <td>일자</td> <td>9월 25일</td> <td>...</td> <td>...</td> <td>10 월 15 일</td> <td>10월 15일</td> <td>10월 31일</td> </tr> </tbody> </table>	품목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			월동 배추	월동무	쪽파· 실파 ([1형]· [2형])	시금 치 (노지)	일자	9월 25일	10 월 15 일	10월 15일	10월 31일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품목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																																					
	고랭지 배추	대파	단호 박	고랭 지 무	당근																																					
일자	7월 31일	5월 20일	5월 29일	7월 31일	8월 31일																																					
품목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																																						
	월동 배추	월동무	쪽파· 실파 ([1형]· [2형])	시금 치 (노지)																																				
일자	9월 25일	10 월 15 일	10월 15일	10월 31일																																				
56	376p	2)경작불능조사	(6) 산지폐기 여부 확인(2차 : 경작 불능 후 조사) 월동무, 월동배추, 쪽파, 당근, 메밀, 시 금치(노지)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 작불능 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6) 산지폐기 여부 확인(2차 : 경작 불능 후(後)조사) 월동배추(고랭지·월동), 월동무(고랭지·월동), 단 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메밀, 시 금치(노지)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 작불능 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57	376p	3)생산비보장 손해조사	(2)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 밀, 시금치(노지) 중 피해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2)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 동), 단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 근, 메밀, 시금치(노지) 중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4.29 반영 완료																
58	376p	3)생산비보장 손해조사	(2) 수확 직전 :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2) 수확 직전 :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단호박, 파(대파, 쪽 파·실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4.29 반영 완료																
59	380p	(라) 배추, 무, 파, 당근, 시금치(노지)	(라) 배추, 무, 파, 당근, 시금치(노지)	(라)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시금치(노지)	4.29 반영 완료																
60	381p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정(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1)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정(배추, 무, 단호박, 파당근, 메밀, 시금치(노지))	4.29 반영 완료																
61	387p	다. 시기별 조사 종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조사내용</th> <th>조사시기</th> <th>조사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해가림시 설 조사</td>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td> <td>해가림 시설</td> </tr> </tbody> </table>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해가림시 설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해가림 시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조사내용</th> <th>조사시기</th> <th>조사방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해가림시 설 조사</td> <td>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td> <td>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td> <td>해가림 시설</td> </tr> </tbody> </table>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해가림시 설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해가림 시설	4.29 반영 완료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해가림시 설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해가림 시설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해가림시 설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해가림 시설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2	390p	표본조사 조사방법	(나) 표본조사 시	(나) 표본조사—사	4.29 반영 완료
63	392p	(2) 표본조사란 수확하는 인삼 중 표본<별표 1>을 정하고 해당 표본의 무게 조사를 통해 전체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농어정책보험금융 내용 추가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p>라)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상기 가)·나)·다)를 적용하여 계산된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p> <p>(2)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존비용¹⁶⁾은 상기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¹⁷⁾ 단, 손해방지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p> <p>(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각주 추가 16)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7) 보험의 목적이 인삼일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4	393p	2)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금 산정	<p>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p> <p>다)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 \div \text{보험가액})}{1}$ <p>* 자기부담금은 최소자기부담금(10만 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 원)을 한도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p> </div> <p>라)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나)(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p> <p>다)(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 \div \text{보험가액})}{1}$ <p>* 자기부담금은 최소자기부담금(10만 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 원)을 한도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p> </div> <p>(3) 위 (1)과 (2)에서 손해액이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말한다.</p> <p>라)나)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5	394p	2)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금 산정	<p>마) 해가림시설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손해방지비용은 농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마) 해가림시설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손해방지비용은 농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p> <p>(1) 보상하는 손해¹⁸⁾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상기 가)·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상기 가)·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농지별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p> <p>(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각주 추가</p> <p>18)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p> <p>19)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6	395p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원예작물 및 원예시설, 버섯 및 버섯재배사)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원예시설 및 시설 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 작물)	4.29 반영 완료
67	396p	가.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원예시설과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해조사	1) 원예시설과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해조사	4.29 반영 완료
68	400p	나.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원예시설과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험금 산정	1) 원예시설과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험금 산정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69	401p	마) 지급보험금의 계산	 <p>(1)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보험금 = MIN(손해액-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p>	<p>(1)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보험금 = MIN(손해액-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보험금 =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p> </div> <p>가)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2)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div> <p>나)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401p	마) 지급보험금의 계산	 <p>(1)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보험금 = MIN(손해액-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보험금의 합계액}}$ </div> <p>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 (3)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상기 (1)과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70	401p	(3) 자기부담금	(3) 자기부담금	바) (3) 자기부담금	4.29 반영 완료
71	401p	마) 지급보험금의 계산	 내용추가	<p>사)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상기 마)의 (1),(2),(3)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²⁰⁾은 상기 마)의 (1),(2),(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다)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각주 추가 20)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72	401p	2) 원예시설작물 및 시설재배 벼섯 보험금 산정	 <p>내용추가</p> <p>농업정책보험금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p>	<p>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생산비보장보험금은 다음 다)의 품목별 보험금 산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하나의 작기(한 작물의 생육기간)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재배 농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p> <p>(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존비용²¹⁾은 다음 다)의 품목별 보험금 산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해당 작기(작물의 생육기간)에서 재배하는 보험증권 기재 농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²²⁾ 단,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각주 추가 21)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22) 농작물의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p> <p>다)나) 보험금 산출방법</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73	409p	제7절 농업수입보장방식 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산물 가격하락을 반영한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은 산출시가격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산물 가격하락을 반영한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은의 산출시가격	4.29 반영 완료
74	413p	(가) 착과수조사	①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①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수확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4.29 반영 완료
75	414p	(나) 표본조사	①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①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수확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4.29 반영 완료
76	418p	4) 비가림시설 보험금 산정	내용추가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77	419p	4) 비가림시설 보험금산정	다)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 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다)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항 또는 나)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4.29 반영 완료
78	419p	4) 비가림시설 보험금 산정	 	<p>사)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상기 가)나)~마)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²⁵⁾은 상기 가)나)~바)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p> <p>(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각주 추가 25)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79	420p	2. 발작물	2. 발작물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2. 발작물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5.9 추가 반영
80	423p	4) 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가) 적용 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5.9 추가 반영
81	424p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콩, 팥 제외) (6)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조사) 양파·마늘·감자(가을재배)· 콩·양배추·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콩, 팥 제외) (6)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조사)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5.9 추가 반영
82	424p	(6) 산지폐기 여부 확인 (경작불능 후(後)조사)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콩, 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콩, 팥 고구마 , 콩, 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83	424p	5) 수확량조사	가) 적용 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가) 적용 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준	정정	비고																														
84	425p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수확량조사 적기</th> </tr> </thead> <tbody> <tr> <td>콩</td> <td>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td> </tr> <tr> <td>양배추</td> <td>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td> </tr> <tr> <td>양파</td> <td>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td> </tr> <tr> <td>감자(가을재배)</td> <td>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td> </tr> <tr> <td>마늘</td> <td>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td> </tr> <tr> <td>고구마</td> <td>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td> </tr> </tbody> </table>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콩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양배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감자(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수확량조사 적기</th> </tr> </thead> <tbody> <tr> <td>콩</td> <td>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td> </tr> <tr> <td>팥</td> <td>팥의 수확적기(꼬투리가 70~80% 이상이 성숙한 시기)</td> </tr> <tr> <td>양배추</td> <td>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td> </tr> <tr> <td>양파</td> <td>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td> </tr> <tr> <td>감자(가을재배)</td> <td>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td> </tr> <tr> <td>마늘</td> <td>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td> </tr> <tr> <td>고구마</td> <td>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td> </tr> </tbody> </table>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콩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팥	팥의 수확적기(꼬투리가 70~80% 이상이 성숙한 시기)	양배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감자(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콩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양배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감자(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콩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팥	팥의 수확적기(꼬투리가 70~80% 이상이 성숙한 시기)																																		
양배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감자(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85	426p	(가) 표본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① 적용 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5.9 추가 반영																														
86	427p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콩</td> <td>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td> </tr> <tr> <td>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td> <td>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td> </tr> </tbody> </table> <p>(나) 전수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콩</p>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콩	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콩, 팥</td> <td>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td> </tr> <tr> <td>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td> <td>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td> </tr> </tbody> </table> <p>(나) 전수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콩, 팥</p>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콩, 팥	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5.9 추가 반영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콩	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콩, 팥	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87	427p	(나) 전수 조사방법	<p>③ 중량 조사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종실)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 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p> <p>④ 콩(종실)의 함수율 조사 10회 이상 종실의 함수율을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 단, 함수율을 측정할 때에는 각 횟수마다 각기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콩을 사용한다.</p>	<p>③ 중량 조사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콩(종실)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 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p> <p>④ 콩콩(종실)의 함수율 조사 10회 이상 종실의 함수율을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 단, 함수율을 측정할 때에는 각 횟수마다 각기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콩을 사용한다.</p>	5.9 추가 반영								
88	429p	[품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table border="1"> <tr> <td>품목</td> <td>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td> </tr> <tr> <td>콩</td> <td>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td> </tr> </table>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콩	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table border="1"> <tr> <td>품목</td> <td>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td> </tr> <tr> <td>콩콩</td> <td>표본구간 내 콩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td> </tr> </table>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콩 콩	표본구간 내 콩 콩 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5.9 추가 반영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콩	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콩 콩	표본구간 내 콩 콩 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89	430p	다.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p>3)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th> <th colspan="3">자기부담비율</th> </tr> <tr>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콩, 양배추, 양파, 감자, 마늘, 고구마</td> <td>보험가입금액 x 40%</td> <td>보험가입금액 x 35%</td> <td>보험가입금액 x 30%</td> </tr> </tbody> </table>	품목	자기부담비율			20%형	30%형	40%형	콩, 양배추, 양파, 감자, 마늘, 고구마	보험가입금액 x 40%	보험가입금액 x 35%	보험가입금액 x 30%	<p>3) 경작불능보험금 산정(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th> <th colspan="3">자기부담비율</th> </tr> <tr> <th>20%형</th> <th>30%형</th> <th>40%형</th> </tr> </thead> <tbody> <tr> <td>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td> <td>보험가입금액 x 40%</td> <td>보험가입금액 x 35%</td> <td>보험가입금액 x 30%</td> </tr> </tbody> </table>	품목	자기부담비율			20%형	30%형	40%형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보험가입금액 x 40%	보험가입금액 x 35%	보험가입금액 x 30%	5.9 추가 반영
품목	자기부담비율																										
	20%형	30%형	40%형																								
콩, 양배추, 양파, 감자, 마늘, 고구마	보험가입금액 x 40%	보험가입금액 x 35%	보험가입금액 x 30%																								
품목	자기부담비율																										
	20%형	30%형	40%형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팥	보험가입금액 x 40%	보험가입금액 x 35%	보험가입금액 x 30%																								
90	433p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소)	<p>나. 종모우 종모우에서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나. 종모우(26) 종모우에서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 추가 26) 씨수소를 말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91	434p	다. 돼지	돼지에서는 화재(벼락을 포함 이하 동일함),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돼지에서는 화재(벼락을 포함 이하 동일함),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4.29 반영 완료
92	434p	라. 가금	<p>라.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가금에서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 3) 상기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한다.</p>	<p>라.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금) 가금에서는 은 화재, 풍재·수재·설해·지진 또는 폭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 3) 상기 손해(폭염 제외)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한다.</p>	4.29 반영 완료
93	435p	마. 말	말에서는 폐사, 긴급도축, 불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말에서는 은 폐사, 긴급도축, 불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94	435p	바. 기타 가축	<p>바. 기타 가축 (사슴, 양, 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가축에서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바. 기타 가축 (사슴, 양²⁷, 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축) 기타 가축에서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 추가 27) 산양(염소)와 면양을 말한다</p>	4.29 반영 완료
95	436 p	바. 기타 가축	<p>가) 서양종(양봉)은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巢脾)가 3매 이상 있는 벌통 나) 동양종(토종벌, 한봉)은 봉군(蜂群)이 있는 상태의 벌통</p>	<p>가) 서양종(양봉)은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巢脾)²⁸가 3매 이상 있는 벌통 나) 동양종(토종벌, 한봉)은 봉군(蜂群)²⁹이 있는 상태의 벌통 *각주 추가 28) 소광(巢光, comb frame; 벌집의 나무틀)에 철선을 건너매고 벌집의 기초가 되는 소초(巢礎)를 매선기를 붙여 지은 집으로 여왕벌이 알을 낳고 일벌이 새끼들을 기르며 꿀과 화분을 저장하는 6,600개의 소방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29) 봉군(蜂群)은 여왕벌, 일벌, 수벌을 갖춘 꿀벌의 무리를 말한다. 우리말로 "벌무리"라고도 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96	438 p	제2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	<p>1. 의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나 보험의 합리적 발전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재해보험사업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는데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손해라 한다. 가축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9개 항목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문별로 적용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각 부문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통적용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항목에 각 부문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된다.</p>	<p>1. 의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나 보험의 합리적 발전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재해보험사업자의 보상 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는데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손해라 한다.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9개 항목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문별로 적용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각 부문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통적용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항목에 각 부문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추가되어 구성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97	438p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p>가. 공통적용 조항</p> <p>.....</p> <p>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 가축전염병에 의한 손해는 평사시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 아닌 이상 위험으로 손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며 구제역 또는 조류독감 등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p> <p>.....</p> <p>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은 사용된 연료를 포함하며,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p> <p>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상기 5), 6), 7)의 경우는 이상 위험으로 손해 정도 등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증대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상법 제660조)에서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p> </div>	<p>가. 공통적용 일반조항(전 부문 공통적용)</p> <p>.....</p> <p>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 *가축전염병에 의한 손해는 평사상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 아닌 이상 위험으로 손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며, 구제역 또는 조류독감 등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p> <p>.....</p> <p>6) 핵연료물질³⁰⁾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³¹⁾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은 사용된 연료를 포함하며,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p> <p>7) 위 6)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상기 5), 6), 7)의 경우는 이상 위험으로 손해 정도 등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증대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상법 제660조)에서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p> </div> <p>*각주 추가</p> <p>30) 사용된 연료를 포함한다.</p> <p>31)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98	440p	3.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소)	가. 소(牛) 소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가. 소(牛) 소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4.29 반영 완료
99	443p	나. 돼지(豚)	돼지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7개 항목을 합하여 총 16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돼지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7개 항목을 합하여 총 16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4.29 반영 완료
100	443p	다.가금	다. 가금(家禽)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가금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금) 가금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4.29 반영 완료
101	444p	라. 말(馬), 종모우(種牡牛)	말, 종모우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 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말·종모우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02	445p	마. 기타 가축	<p>마. 기타 가축(家畜) (사슴, 양, 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가축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8개 항목을 합하여 총 17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p>	<p>마. 기타 가축(사슴, 양³²), 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축) 기타 가축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8개 항목을 합하여 총 17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 추가 23) 산양(염소)와 면양을 말한다</p>	4.29 반영 완료
103	454p	2) 한우(암컷, 수컷) 보험가액 산정	2) 한우(암컷, 수컷) 보험가액 산정	2)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보험가액 산정	4.29 반영 완료
104	458p	다. 가금 부문	다. 가금 부문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다. 가금 부문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금)	4.29 반영 완료
105	461p	라. 말, 종모우, 기타 가축 부문	가축보험 말, 종모우, 기타 가축 부문에서 손해액은.....	가축재해보험 말, 종모우, 기타 가축 부문에서 손해액은.....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06	463p	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이 많이 적용되는데 동 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보험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이면 보험 가입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보상하고 약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만 비례보상한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이 많이 적용되는데 동 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금 가 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보험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실손 보상하고 약정 일정 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만 비례보상한다.	4.29 반영 완료
107	465p	라.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목적물의 경년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준용하며,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목적물의 경년감가율은 한국 부동산원 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준용하며,	4.29 반영 완료
108	465p	바. 잔존보험가입금액	내용추가	<p>바. 잔존보험가입금액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09	465p	2. 소(牛)도체결함보장 특약	<p>가. 손해액의 산정 특약에서 손해액 산정은 사고소의 도체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평균 경락가격과 사고소 도체의 경락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손해액} = \text{보험가액} - \text{사고소의 1두 경락가격}$ </div> <p>나.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전부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보험금 계산방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p>	<p>*내용 추가 및 전면 수정 가. 손해액의 산정 특약에서 손해액은 사고소의 도체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평균 경락가격[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도체(정상도체)의 가격]과 사고소 도체의 경락가격으로 계산한 1두가격의 차액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begin{aligned} \text{보험가액} &= \text{정상도체의 해당등급(사고소 등급)의 1두가격} \\ \text{손해액} &= \text{정상도체의 해당등급(사고소 등급) - 사고소의 1두 경락가격} \end{aligned}$ </div> <p>※ 1두가격 = 사고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원/지육kg) x 사고소(牛)의 도체중(kg) 단, kg당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시하는 가격을 따른다. ※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처분된 소의 손해액은 보통약관 소 부문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따른다.</p> <p>나. 지급보험금의 계산 상기 가. 손해액의 산정에서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한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p>농업정책보험금융서비스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ial Service</p>	<p>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p> <p>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div> <p>3)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div> <p>나)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특별약관)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보험금의 합계액}}$ </div> <p>3)4)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p>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p>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안분배분하여 상기계산방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p> <p>4)5) 상기 나.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p> <p>*각주 추가 33) 도체의 결함 : 결함은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판정한 "근출혈(※), 수종(ㄱ), 근염(ㅇ), 외상(ㅅ), 근육제거(ㄱ), 기타(ㄷ)를 말한다</p>	
110	466p	3.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p>농업정책보험금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p> <p>내용 추가</p>	<p>가. 보상하는 손해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폐사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34)가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전염성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 TGE virus 감염증)</p> <p>2.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 PED virus 감염증)</p> <p>3.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 virus 감염증)</p> </div> <p>이 특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분변,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형광항체법 또는 PCR(Polymerase</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p>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법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임상적인 증거로 인정된다.</p> <p>까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p> <p>*각주 추가 34)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목적이 폐사할 경우를 포함한다.</p>	
111	467p	3.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p>나. 손해액 산정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약관의 돼지부문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나다. 손해액 산정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약관 돼지 부문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이 특약의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4.29 반영 완료
112	467p	3.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p>다. 자기부담금 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통약관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p>	<p>따라. 자기부담금 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통약관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13	467p	4.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p>가. 손해액 및 지급보험금</p> <p>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약관에서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익률을 공정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조항과 피보험자의 손해경감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p> <p>단, 종빈돈은 아래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종빈돈} \times 10 \times 1\text{두당 비육돈}(100\text{kg 기준})\text{평균가격} \times \text{이익률}$ </div> <p>※ 후보돈과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한다.</p> <p>※ "이익률"은 손해발생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p> <p>• 이익률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경영비)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p> <p>※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한다.</p>	<p>다. 손해액 및 지급보험금</p> <p>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약관에서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익률을 공정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조항과 피보험자의 손해경감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p> <p>피보험자가 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종빈돈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종빈돈} \times 10 \times 1\text{두당 비육돈}(100\text{kg 기준})\text{평균가격} \times \text{이익률}$ </div> <p>※ 단, 후보돈과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한다.</p> <p>※ "이익률"은 손해발생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p> <p>• 이익률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경영비)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p> <p>※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14	467p	4. 돼지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p>내용 추가</p> <p>농업정책보험금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ing</p>	<p>가. 용어의 정의</p> <p>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p> <p>1) 축산휴지 :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말한다.</p> <p>2) 축산휴지손해 : 보상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축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사업이익과 보상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금액을 말한다.</p> <p>3) 사업이익 : 1두당 평균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을 말한다.</p> <p>4) 보험가입금액 : 이 특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p> <p>5) 1두당 평균가격 : 상기 4. 손해액의 조사의 나) 돼지 부문에서 정한 비육돈 생체중량 100kg의 가격을 말한다.</p> <p>6) 경영비 :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경영비를 말한다.</p> <p>7) 이익률 : 손해발생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이익률} = \frac{\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text{경영비}}{\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div> <p>※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한다.</p>	4.29 반영 완료 (5.9 추가 반영)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15	467p	4. 돼지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p>내용 추가</p>	<p>나. 보상하는 손해</p> <p>보험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생긴 손해액을 보상한다.</p> <p>1) 보험금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과할 수 없다.</p> <p>2)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가축에 대하여 보통약관 또는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한다.</p>	4.29 반영 완료
116	468p	4. 돼지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17	468p	4. 돼지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p>내용 추가</p> <p>농업정책보험금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ing</p>	<p>라. 손해액 산정</p> <p>피보험자가 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종빈돈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종빈돈} \times 10 \times 1\text{두당 비육돈}(100\text{kg 기준})\text{평균가격} \times \text{이익률}$ </div> <p>※ 단, 후보돈과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한다.</p> <p>마. 이익률의 조정</p> <p>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사정에 있어서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p> <p>바. 지급보험금의 계산</p> <p>상기 라. 손해액 산정에서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5절 보험금 지급 및 실사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p> <p>사. 자기부담금</p> <p>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p> <p>아. 손해의 경감</p> <p>피보험자는 축산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1) 보험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p> <p>2)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18	469p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p>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게 될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하며, 피보험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이다.</p> <p>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에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서 상호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한다.</p>	<p>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게 될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하며, 피보험이익을 경제적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이다.</p> <p>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에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과의 관계에서 상호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한다.</p>	4.29 반영 완료
119	469p	2. 지급보험금의 계산	<p>각 보험증권별로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계산방식이 같은 경우는 비례분담방식, 다른 경우는 독립책임액분담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p>	<p>각 보험증권별로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계산방식이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 비례분담방식, 다른 경우는 독립책임액분담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p>	4.29 반영 완료
120	471p	3. 자기부담금	<p>가축보험에서 소, 돼지, 종모우, 가금, 기타 가축 부분의</p>	<p>가축재해보험에서 소, 돼지, 종모우, 가금, 기타 가축 부분의</p>	4.29 반영 완료
121	472p	4. 잔존보험가입금액	<p>보험기간의 중도에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부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해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에서 그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장하는데 이때 보험가입금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한다.</p> <p>가축보험은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부문에서 약관 규정에 따라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다.</p>	<p>보험기간의 중도에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부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해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에서 그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장하는데 이때 보험가입금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한다.</p> <p>가축재해보험은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부문에서 약관 규정에 따라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22	472p	5. 비용손해의 지급한도	<p>가축보험에서는 잔존물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 5가지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비용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손해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가축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p> <p>협력비용은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에도 비례분담 방식 등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며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p>가축재해보험에서는 잔존물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 5가지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비용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손해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p> <p>기타 협력비용은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에도 비례분담방식 등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p>	4.29 반영 완료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23	474p	다. 보험금 지급심사시 유의사항	<p>1) 계약체결의 정당성 확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p> <p>.....</p> <p>3) 고지의무위반 등 여부</p> <p>.....</p> <p>4) 면책사유 확인 청구시효 소멸 여부를 확인한다.</p>	<p>1) 계약체결의 정당성 확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p> <p>.....</p> <p>3) 고지의무위반 등 여부 확인</p> <p>.....</p> <p>4) 면책사유 확인 청구시효 소멸 여부를 등을 확인한다.</p>	4.29 반영 완료																																																																																																
124	478p	[별표 1] 품목별 표본주(구간)수 표	<p><참다래,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참다래</th> <th colspan="2">매실, 대추</th> <th colspan="2">오미자</th> </tr> <tr> <th>조사대상 주수</th> <th>표본 주수</th> <th>조사대상 주수</th> <th>표본 주수</th> <th>조사대상 유인틀 길이</th> <th>표본 주수</th> </tr> </thead> <tbody> <tr> <td>50주 미만</td> <td>5</td> <td>100주 미만</td> <td>5</td> <td>500m 미만</td> <td>5</td> </tr> <tr> <td>50주 이상 100주 미만</td> <td>6</td> <td>100주 이상 300주 미만</td> <td>7</td> <td>500m 이상 1,000m 미만</td> <td>6</td> </tr> <tr> <td>100주 이상 200주 미만</td> <td>7</td> <td>300주 이상 500주 미만</td> <td>9</td> <td>1,000m 이상 2,000m 미만</td> <td>7</td> </tr> <tr> <td>200주 이상 500주 미만</td> <td>8</td> <td>500주 이상 1,000주 미만</td> <td>12</td> <td>2,000m 이상 4,000m 미만</td> <td>8</td> </tr> <tr> <td>500주 이상 800주 미만</td> <td>9</td> <td>1,000주 이상</td> <td>15</td> <td>4,000m 이상 6,000m 미만</td> <td>9</td> </tr> <tr> <td>800주 이상</td> <td>10</td> <td></td> <td></td> <td>6,000m 이상</td> <td>10</td> </tr> </tbody> </table>	참다래		매실, 대추		오미자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유인틀 길이	표본 주수	50주 미만	5	100주 미만	5	500m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300주 미만	7	500m 이상 1,000m 미만	6	100주 이상 200주 미만	7	300주 이상 500주 미만	9	1,000m 이상 2,000m 미만	7	200주 이상 500주 미만	8	500주 이상 1,000주 미만	12	2,000m 이상 4,000m 미만	8	500주 이상 800주 미만	9	1,000주 이상	15	4,000m 이상 6,000m 미만	9	800주 이상	10			6,000m 이상	10	<p><참다래,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참다래</th> <th colspan="2">매실, 대추, 살구</th> <th colspan="2">오미자</th> </tr> <tr> <th>조사대상 주수</th> <th>표본 주수</th> <th>조사대상 주수</th> <th>표본 주수</th> <th>조사대상 유인틀 길이</th> <th>표본 주수</th> </tr> </thead> <tbody> <tr> <td>50주 미만</td> <td>5</td> <td>100주 미만</td> <td>5</td> <td>500m 미만</td> <td>5</td> </tr> <tr> <td>50주 이상 100주 미만</td> <td>6</td> <td>100주 이상 300주 미만</td> <td>7</td> <td>500m 이상 1,000m 미만</td> <td>6</td> </tr> <tr> <td>100주 이상 200주 미만</td> <td>7</td> <td>300주 이상 500주 미만</td> <td>9</td> <td>1,000m 이상 2,000m 미만</td> <td>7</td> </tr> <tr> <td>200주 이상 500주 미만</td> <td>8</td> <td>500주 이상 1,000주 미만</td> <td>12</td> <td>2,000m 이상 4,000m 미만</td> <td>8</td> </tr> <tr> <td>500주 이상 800주 미만</td> <td>9</td> <td>1,000주 이상</td> <td>15</td> <td>4,000m 이상 6,000m 미만</td> <td>9</td> </tr> <tr> <td>800주 이상</td> <td>10</td> <td></td> <td></td> <td>6,000m 이상</td> <td>10</td> </tr> </tbody> </table>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유인틀 길이	표본 주수	50주 미만	5	100주 미만	5	500m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300주 미만	7	500m 이상 1,000m 미만	6	100주 이상 200주 미만	7	300주 이상 500주 미만	9	1,000m 이상 2,000m 미만	7	200주 이상 500주 미만	8	500주 이상 1,000주 미만	12	2,000m 이상 4,000m 미만	8	500주 이상 800주 미만	9	1,000주 이상	15	4,000m 이상 6,000m 미만	9	800주 이상	10			6,000m 이상	10	4.29 반영 완료
참다래		매실, 대추		오미자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유인틀 길이	표본 주수																																																																																																
50주 미만	5	100주 미만	5	500m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300주 미만	7	500m 이상 1,000m 미만	6																																																																																																
100주 이상 200주 미만	7	300주 이상 500주 미만	9	1,000m 이상 2,000m 미만	7																																																																																																
200주 이상 500주 미만	8	500주 이상 1,000주 미만	12	2,000m 이상 4,000m 미만	8																																																																																																
500주 이상 800주 미만	9	1,000주 이상	15	4,000m 이상 6,000m 미만	9																																																																																																
800주 이상	10			6,000m 이상	10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유인틀 길이	표본 주수																																																																																																
50주 미만	5	100주 미만	5	500m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300주 미만	7	500m 이상 1,000m 미만	6																																																																																																
100주 이상 200주 미만	7	300주 이상 500주 미만	9	1,000m 이상 2,000m 미만	7																																																																																																
200주 이상 500주 미만	8	500주 이상 1,000주 미만	12	2,000m 이상 4,000m 미만	8																																																																																																
500주 이상 800주 미만	9	1,000주 이상	15	4,000m 이상 6,000m 미만	9																																																																																																
800주 이상	10			6,000m 이상	10																																																																																																

순번	페이지	제목	기준	정정	비고																														
125	481p	[별표 1] 품목별 표본주 (구간)수 표	<p><고추,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노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th> <th>표본구간(이랑) 수</th> </tr> </thead> <tbody> <tr> <td>3,000㎡ 미만</td> <td>4</td> </tr> <tr> <td>3,000㎡ 이상, 7,000㎡ 미만</td> <td>6</td> </tr> <tr> <td>7,000㎡ 이상, 15,000㎡ 미만</td> <td>8</td> </tr> <tr> <td>15,000㎡ 이상</td> <td>10</td> </tr> </tbody> </table>	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	표본구간(이랑) 수	3,000㎡ 미만	4	3,000㎡ 이상, 7,000㎡ 미만	6	7,000㎡ 이상, 15,000㎡ 미만	8	15,000㎡ 이상	10	<p><고추,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노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th> <th>표본구간(이랑) 수</th> </tr> </thead> <tbody> <tr> <td>3,000㎡ 미만</td> <td>4</td> </tr> <tr> <td>3,000㎡ 이상, 7,000㎡ 미만</td> <td>6</td> </tr> <tr> <td>7,000㎡ 이상, 15,000㎡ 미만</td> <td>8</td> </tr> <tr> <td>15,000㎡ 이상</td> <td>10</td> </tr> </tbody> </table>	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	표본구간(이랑) 수	3,000㎡ 미만	4	3,000㎡ 이상, 7,000㎡ 미만	6	7,000㎡ 이상, 15,000㎡ 미만	8	15,000㎡ 이상	10	4.29 반영 완료										
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	표본구간(이랑) 수																																		
3,000㎡ 미만	4																																		
3,000㎡ 이상, 7,000㎡ 미만	6																																		
7,000㎡ 이상, 15,000㎡ 미만	8																																		
15,000㎡ 이상	10																																		
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	표본구간(이랑) 수																																		
3,000㎡ 미만	4																																		
3,000㎡ 이상, 7,000㎡ 미만	6																																		
7,000㎡ 이상, 15,000㎡ 미만	8																																		
15,000㎡ 이상	10																																		
126	485p	[별표 3]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p><복숭아, 감귤 외 과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실분류</th> <th>피해인정계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정상과</td> <td>0</td> <td>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td> </tr> <tr> <td>50%형 피해과실</td> <td>0.5</td> <td>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td> </tr> <tr> <td>80%형 피해과실</td> <td>0.8</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td> </tr> <tr> <td>100%형 피해과실</td> <td>1</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td> </tr> </tbody> </table>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p><복숭아, 감귤 외 과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실분류</th> <th>피해인정계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정상과</td> <td>0</td> <td>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td> </tr> <tr> <td>50%형 피해과실</td> <td>0.5</td> <td>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td> </tr> <tr> <td>80%형 피해과실</td> <td>0.8</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td> </tr> <tr> <td>100%형 피해과실</td> <td>1</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td> </tr> </tbody> </table>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5.9 반영 완료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27	485p	[별표 3]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p><복숭아></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실분류</th> <th>피해인정계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정상과</td> <td>0</td> <td>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td> </tr> <tr> <td>50%형 피해과실</td> <td>0.5</td> <td>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td> </tr> <tr> <td>80%형 피해과실</td> <td>0.8</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td> </tr> <tr> <td>100%형 피해과실</td> <td>1</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td> </tr> </tbody> </table>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p><복숭아></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실분류</th> <th>피해인정계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정상과</td> <td>0</td> <td>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td> </tr> <tr> <td>50%형 피해과실</td> <td>0.5</td> <td>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td> </tr> <tr> <td>80%형 피해과실</td> <td>0.8</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td> </tr> <tr> <td>100%형 피해과실</td> <td>1</td> <td>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td> </tr> </tbody> </table>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5.9 반영 완료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28	493p	[별표 7] 품목별 감수과실 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조사 시기</th> <th>재해 종류</th> <th>조사 종류</th> <th>감수과실수 산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단감 · 뽕은감</td> <td>적과 종료 이후</td> <td>가을 동상 해</td> <td>착과 피해 조사</td> <td>착과 손해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인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td> </tr> </tbody> </table>	품목	조사 시기	재해 종류	조사 종류	감수과실수 산정방법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가을 동상 해	착과 피해 조사	착과 손해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인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조사 시기</th> <th>재해 종류</th> <th>조사 종류</th> <th>감수과실수 산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단감 · 뽕은감</td> <td>적과 종료 이후</td> <td>가을 동상 해</td> <td>착과 피해 조사</td> <td>착과 손해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인 일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td> </tr> </tbody> </table>	품목	조사 시기	재해 종류	조사 종류	감수과실수 산정방법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가을 동상 해	착과 피해 조사	착과 손해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 인 일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4.29 반영 완료										
품목	조사 시기	재해 종류	조사 종류	감수과실수 산정방법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가을 동상 해	착과 피해 조사	착과 손해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인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품목	조사 시기	재해 종류	조사 종류	감수과실수 산정방법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가을 동상 해	착과 피해 조사	착과 손해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 인 일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순번	페이지	제목	기존	정정	비고																																
129	574p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p>[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장 범위</th> <th>산정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특정 위험 방식</td> <td>인삼</td> <td>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td> <td>인삼</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종합 위험 방식</td> <td>농업 수입 감소</td> <td>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td> <td></td> </tr> </tbody> </table> <p>* (참고) 위 손해평가요령은 2019년 12월 18일 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이 위와 상이할 수 있음. 현행(2021년) 상품의 보험금 산정 방식은 <별표 7>과 같음</p>	구분	보장 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 위험 방식	인삼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인삼	종합 위험 방식	농업 수입 감소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p>* (일러두기) 아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별표1]은, 2019년 12월 18일 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이 본문의 산정 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현행(2021년) 상품의 정확한 보험금 산정 방식은 <별표 7>과 같음</p> <p>[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장 범위</th> <th>산정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특정 위험 방식</td> <td>인삼</td> <td>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td> <td>인삼</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종합 위험 방식</td> <td>농업 수입 감소</td> <td>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td> <td></td> </tr> </tbody> </table> <p>* (참고) 위 손해평가요령은 2019년 12월 18일 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이 위와 상이할 수 있음. 현행(2021년) 상품의 보험금 산정 방식은 <별표 7>과 같음</p>	구분	보장 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 위험 방식	인삼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인삼	종합 위험 방식	농업 수입 감소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4.29 반영 완료
구분	보장 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 위험 방식	인삼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인삼																																		
.....																																		
종합 위험 방식	농업 수입 감소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구분	보장 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 위험 방식	인삼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인삼																																		
.....																																		
종합 위험 방식	농업 수입 감소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